

###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

의안번호	제56호
의결년월일	98. 10. 28 (제65회)

제안년월일 : 1998. 10. 27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○ 1998년 10월 27일 제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.

감사대상기관	성격 및 근거	감사사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</li> <li>• 혜립원</li> <li>• 성가요양원</li> <li>• 사회복지관(6개소)</li> <li>• 노인복지회관(2개소)</li> <li>• 시립어린이집(13개소)</li> <li>• 부천문화의집</li> <li>• 세소망소년의 집</li> <li>• 새마을금고중앙회부천시지부 (부천시세마을이동도서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</li> <li>•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항제5호</li> <li>•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제4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운영의 효율적 집행 여부</li> <li>•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성과 여부</li> </ul>